

1. 都市計画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16號 1992. 11. 19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
2. 영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인가 및 공고등의 내용(설계도서를 제외한다)
3. 영 제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지형도의 승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지형도 및 설

계도서를 제외한다)

제3조의 2를 제3조의 3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 2 및 제3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영 제7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중 주간선도로
2.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3. 자동차정류장중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중 도시철도
5. 공원
6. 운동장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7. 공용의 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8. 학교중 대학
9. 하수도중 종말처리장
10. 공동묘지

11. 화장장
12. 폐기물처리시설
13. 수질오염방지시설
14. 유통업무설비

제3조의3 (경미한 사항) 영 제7조의3 제7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지역·지구 및 구역의 축소 결정
2. 영 제7조의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의 변경결정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4.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

제3조의4 (도시계획결정의 신청을 위한 서류와 도면) 법 제12조제5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말한다.

1.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 조서와 그 사유서
2.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도시계획결정도 및 변경결정도
3.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시계획총괄도

4.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서류
5.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서
6. 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에 관한 서류
7.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제4조 제1항 본문중 “영 제11조제1항제6호”를 “영 제11조제1항제7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본문중 “영 제12조제1항제7호”를 “영 제12조제1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장·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시장(서울 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 제4호중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2.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의한 인화성액체중, 유

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
저장시설

3. 열공급설비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23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자
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
기일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 ①

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행자는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및 설계도서
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
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도시계획법의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27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면의 범위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특수학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도시계획의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주간선도로·도시·철도·대학·공원·종말처리장·공동묘지등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로 함(제3조의 2).
- 나.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의 종류를 정함(제3조의 4)
- 다.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의 종류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인화성액체중 유류저장시설과 열공급설비를 추가함(제6조).
- 라.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1조의4 제1항).

〈건설부 제공〉

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